

의안번호	2205474
의 퇴 인	김종민 의원
회 답 일	2025. 1. 9.
추계번호	24A5059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(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)	·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음 － 전략산업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(제2호의2 신설) ·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함(제3항제2호 삭제)	재량규정 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(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에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,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이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로 지정되고, 동 지역에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를 설치해야하는 경우 특화단지 지원을 위해 기편성된 예산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
 -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사업으로는 ‘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구축(3171-364)’사업이 있음

[표 1] ‘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반시설 지원구축(3171-364)’ 사업 예산 현황

(단위:백만원)

세부사업명 (- 내역사업명)	2025 예산안
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반시설 지원 구축	25,213
- 포항이차전지 특화단지	7,130
- 청주이차전지 특화단지	3,593
- 새만금이차전지 특화단지	10,780
- 울산이차전지 특화단지	3,430
- 기획평가관리비	280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

주 : 해당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임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지정되는 비수도권 지역 수와 선정 지역 등이 구체화되어야 함
 - 각 특화단지별 지원금액은 산업단지 내 신규투자 예정인 입주기업에 보조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함

- 이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,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nabo.go.kr